

CEO
Report

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

2006. 3

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에 대한
경영상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
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< 목 차 >

I. 검토배경	1
II. 자동차보험 환경의 변화	2
III. 지급준비금 적립현황 및 문제점	9
IV. 개선과제	12

I. 검토배경

- 2001.8월 가격자유화 이후 경쟁격화로 손해율 악화우려와 함께 자동차보험 전체 지급준비금 적립률 하락추이가 지속될 전망
 - 또한, '05.8월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조치와 정비요금 인상개정 등에 따른 손해율 급상승으로 지급준비금 적립률이 추가로 하락할 여지가 있어 피해자보호가 미흡해질 우려
- 현행 지급준비금은 감독규정(I)에 의해 CLM 기준 최저적립액 이상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며, 감독규정(II)에 의해 적정성 검증을 하여 과·부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과·부족을 IBNR 준비금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
 - 그러나, 현실적으로는 감독규정(I)에 의해 지급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데, 동 CLM 기준은 보상정책 변화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속도 변화에 대처방안이 없어 속도변화시 회사별 적립수준의 과·부족이 심화될 소지
-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의 적립현황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,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

<용어정리>

- * CLM(Chain Ladder Method) : 과거 수년간 보험금 진전추이에 따라 향후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지급준비금을 산출하는 방식
- * IBNR(Incurred But Not Reported) :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

II. 자동차보험 환경의 변화

1. 손해율 악화

- 최근 '05.8.15 교통법규위반자 대사면 등에 따라 손해율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

<표 1> FY'05 손해율 현황

(단위 : %)

구 분	'05.4	'05.5	'05.6	'05.7	'05.8	'05.9	'05.10	'05.11	'05.12
당 월	71.5	71.7	71.1	71.6	73.2	74.4	77.7	82.2	91.5
누 적	71.5	71.6	71.4	71.7	72.0	72.7	73.4	74.5	76.5

-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에 따른 사고율 증가는 과거 사면 전 · 후 1년간의 사고율 변화로 살펴보면 약 10% 수준으로 추정

<표 2> 교통법규위반자 사면 전 · 후 사고율 비교(대인배상 I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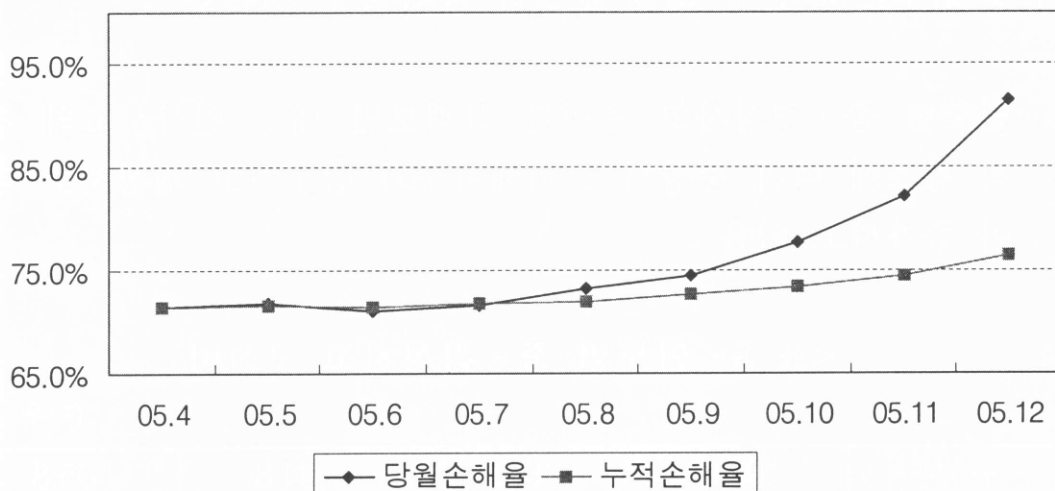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사 면 일 자	사 면 내 용	사면 전 1년간 사고율(A)	사면 후 1년간 사고율(B)	사고율 변동효과 (C=B/A-1)
'98.3월	특별사면 532만명	3.11	3.44	10.6
'02.7월	특별사면 481만명	4.66	5.11	9.7
'05.8월	특별사면 420만명	5.33	-	-

- 또한, 정비요금 인상과 보험료 인상간의 시차존재에 따른 대물 · 차량담보 손해율 악화
- 정비요금 인상은 2005.9월부터 모든 사고에 대해 적용되었으나,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2005.11월이후 계약부터 반영됨에 따른 인상조정 시차 발생

- 즉, 인상된 보험료는 11월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나, 인상된 정비요금은 모든 사고에 대해 적용되므로 향후 1년간은 인상요인의 50%만 반영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손해율 악화 불가피
- 기타 속도위반 단속 모형카메라 철거에 따른 운행자의 속도증가, 고유가 지속으로 유가부담이 만성화되어 유가인상에 따른 운행 감소효과 반감

<그림 1> FY'05 손해율 현황



2. 보험금 지급속도 변화

※ 보험금 지급속도 변화

- 최근의 보험금 신속화 유형은 경상사고의 증가로 평균종결기간이 짧아지는 자연적 신속화와 조기 종결유도로 손해액 경감을 도모하는 인위적 신속화로 구분됨
- 보험금 지급속도 둔화는 신속화의 반대로서 교통사고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발생함

□ 중상사고 감소에 의한 보험금 지급속도 신속화

- 연도별 중·경상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대형 인사사고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중상사고 피해자수가 감소하고 경상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

<표 3> 연도별 중·경상사고 구성비

(단위 : %)

구 분	'02.8	'03.8	'04.8	'05.8
중 상	7.0	5.8	4.9	4.4
경 상	93.0	94.2	95.1	95.6
계	100.0	100.0	100.0	100.0

주 : 1) 사고년도별 피해자수 기준

2) 사망, 부상 1~7급 / 부상 8~14급

- 이에 따라 총 손해액 중 초년도 지급액의 구성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표 4> 연도별 중·경사고 변화에 따른 초년도 지급액 구성비 변화
(단위 : %)

구 분	'02.8	'03.8	'04.8	'05.8
초년도 지급액	60.1	62.0	63.8	64.8

□ 보험금 지급 일부지연 가능성

- 최근 1년간 피해자 1인당 손해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5.4% 감소, 지급준비금은 9.7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－ 이는 1년전 피해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 바 최근 1년간 보험금 지급이 과거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

<표 5> '04.9~'05.8 피해자 1인당 손해상황 변화(전년대비 증감률)
(단위 : %)

구 분	지급보험금	O/S
전 체	-5.4	9.7

주 : 전년도 급별 피해자 구성비 기준

※ 보험금 지급속도 변화 예시

- 甲회사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5.5% 증가하였고 지급준비금은 27.7% 감소하였는데, 이는 보험금 지급속도가 현저히 신속해진 때문으로 파악됨
 - － 따라서, 甲회사의 경우 조정계수를 사용하여 감독규정 준비금을 재평가한 결과 감독규정상 최저준비금 대비 적립률이 104.9%(현행) → 119.0%(조정계수 적용)으로 높아짐
 - * 조정계수 : 개발원에서 2001년 제시한 수정 계산방법
- 乙회사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11.3% 감소하였고 지급준비금은 1.3% 증가되었는데, 이는 보험금 지급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파악됨

3. 지급준비금 적립수준 및 적립률 추이

□ 지급준비금 적립수준

- 현행 감독규정상 대인배상의 지급준비금은 CLM방법과 개별추산방법에 의한 지급준비금(IBNR 포함) 중 많은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

* 감독규정상 CLM방법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의 사고발생연도 기준 지급보험금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할인적립토록 하고 있음

- 감독규정 지급준비금 대비 실제적립액은 대형사의 경우 28.7%, 중형사는 18.1% 초과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소형사의 경우 -2.5%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남

<표 6> 보험업감독규정 대비 적립수준('05.8월 기준)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감독규정 요구액(A)	실제 적립액(B)	적립률 (C=B/A)
대형사	8,511	10,951	128.7
중형사	2,705	3,174	117.4
소형사	1,480	1,444	97.5
전업사	431	431	100.0
전 체	13,126	16,000	121.9

주 : 1) 실제적립액 = O/S + IBNR - 구상O/S

2) Regent사 인수실적 제외

※ 자동차보험 영위기간이 5년미만인 전업사는 감독규정상 CLM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실제적립액을 감독규정 요구액으로 간주하였으며, 소형사는 실제 연도말 결산시에는 적립률이 100%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

□ 지급준비금 적립률 추이

- 지급보험금 대비 지급준비금 적립률 추이는 중·대형사고 감소 및 경쟁격화 등으로 적립률이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보험금 지급속도 일부 둔화와 일부회사의 준비금 적립증가 등에 따라 적립률이 다소 증가함

<표 7> 지급준비금 적립률 추이

(단위 : %)

구 분	지급보험금 대비 지급준비금 적립률			
	'02.8	'03.8	'04.8	'05.8
대형사	64.1	55.0	50.4	50.9
중형사	58.8	55.3	52.1	54.6
소형사	79.3	57.9	49.7	48.0
전업사	80.8	52.0	41.6	37.7
전 체	65.2	55.3	50.4	50.7

- 추산(100% 기준) 대 결정비율의 연도별 추이가 102.1%→112.7%→114.3%로 증가하고 있어 최초 추산액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음
 - 이 중 대형사는 96.8%→107.1%→106.4%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나, 중형사는 119.8%→127.9%→132.0%, 소형사는 110.9%→127.9%→142.2%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

<표 8> 추산 대 결정비율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	'01.9~'02.8	'02.9~'03.8	'03.9~'04.8
대형사	추산액	1,095	905	789
	결정액	1,060	969	839
	차 이	96.8	107.1	106.4
중형사	추산액	1,021	889	771
	결정액	1,223	1,137	1,018
	차 이	119.8	127.9	132.0
소형사	추산액	1,063	865	679
	결정액	1,178	1,106	965
	차 이	110.9	127.9	142.2
전 체	추산액	1,077	889	759
	결정액	1,099	1,002	867
	차 이	102.1	112.7	114.3

주 : 1) 추산 대 결정비율은 최초 사고년도 추산액과 1년후 결정액(미지급 O/S 포함) 대비율

2) 1인당 추산액 기준

Ⅲ. 지급준비금 적립현황 및 문제점

□ 지급준비금 적립현황

○ '05.8월 기준 지급준비금 적립액은 1조6,000억원으로 감독규정상 최저적립액 1조3,126억원보다 21.9%(2,874억원) 초과 적립하고 있으나, 적정수준보다 2.4%(399억원) 과소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－ 회사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사를 제외하고 중·소형사 모두 적정수준보다 과소하게 적립하고 있으며, 이는 최근의 가격경쟁 격화 등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됨

* 적정수준 준비금은 회사의 지급보험금 또는 손해액 추세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적 모형(CLM, APM, BFM 등) 및 추이를 선택하고 보험금 지급속도 변화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며, 외국의 경우에도 준비금 계리사가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산출함

<표 9> 적정수준 준비금 대비 적립률('05.8월 기준)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적정수준 (A)	실제 적립액(B)	적립률 (C=B/A)
대형사	10,858	10,951	100.9
중형사	3,341	3,174	95.0
소형사	1,769	1,444	81.6
전업사	431	431	100.0
전 체	16,399	16,000	97.6

□ 감독규정 CLM은 보험금 지급속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

○ 보험금 지급속도가 신속해진 경우 지급준비금이 적게 추산되어야 하나 현행 CLM제도는 지급속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과다추산으로 나타남에 따라 당해회사의 영업이익이 필요이상으로 감소하거나 적자반전 가능

－ 또한, 지급속도를 둔화시키면 준비금이 더 많이 필요하나 현행 CLM제도는 오히려 지급준비금을 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현 제도가 보험회사의 지급속도 지연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

○ 당해연도 보험금 지급속도가 1% 신속 또는 둔화된 경우를 가정하여 감독규정상 준비금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

* 지급속도 1% 신속화는 정상적일 경우 당년도 총 지급보험금(100%)보다 1% 추가 지급되어 101%가 지급된 것을 의미

<표 10> 지급속도 변화시 현행 감독규정 준비금 변화 예시

(단위 : 억원, %)

속도변화 없을 경우		당해연도 1% 신속			당해연도 1% 둔화		
지 급 보험금	감독규정 산출액	필 요 준비금 (A)	감독규정 산출액 (B)	차이 (C=B/ A-1)	필 요 준비금 (D)	감독규정 산출액 (E)	차이 (F=E/D -1)
28,014	13,126	12,846	13,339	+3.8	13,406	12,916	-3.7

－ 당해연도 지급보험금은 2조8,014억원으로 지급속도가 1% 신속화 될 경우 280억원이 추가 지급되어 준비금은 280억원 적은 1조2,846억원(=13,126-280)이 실제 필요하나, 감독규정상 산출액은 실제필요액보다 3.8% 많은 1조3,339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,

- 역으로 지급속도의 1% 둔화를 가정할 경우 준비금은 1조3,406억원($=13,126+280$)이 실제 필요하나, 산출액은 1조2,916억원으로 실제필요액 1조3,406억원보다 3.7% 낮게 산출되는 것으로 분석됨

□ 손해사정비 준비금 적립 필요

- 지급준비금은 보험사의 부채로서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며, 손해사정비는 사고가 종결될 때까지 또는 지급준비금의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함께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임
- 손해사정비는 사고의 보상처리와 대위 및 구상권 행사에 소요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제비용으로 보험사의 영업이 정지 또는 파산하더라도 기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업무는 종결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바 지급준비금과 함께 보험사의 부채로 적립되어야 할 필요

IV. 개선과제

□ 지급준비금 적립 충실화 및 적정위험도를 반영한 보험료 산출

○ 최근 보험사간 가격경쟁 격화 등에 따라 지급준비금이 과소 적립되는 경향이 있는바,

- 보험사는 지급준비금을 정상적으로 충실히 적립하고 그에 따른 손해율 상승분은 보험료 인상조정을 통해 해결하여 보험 경영의 선순환을 유도할 필요

□ 보험금 지급속도 변화를 반영한 조정계수 사용 필요

○ 보험금 지급속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감독규정(Ⅰ)에 조정계수를 사용토록 하여 지급속도가 현저히 변화된 회사의 준비금 적정적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

- 이러한 지급속도 변화는 1년 경과시 경과년수별 지급보험금 Table에 모두 기록되어 통상 차년도 CLM 추산시 반영됨

□ 중·대형사고 감소방안 수립을 통한 지급준비금 적립부담 해소

○ 지역별 요율차등화 도입을 통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로교통시설의 개선과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사고 감소 유도 필요

○ 그 밖에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상향 조정 및 중앙분리대 확대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 확충 건의 필요

□ 손해사정비 준비금 적립

- 손해사정비의 준비금 적립을 통해 보험사의 영업정지 또는 파산시에도 기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보상처리 지원업무가 필요한 바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이에 따른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필요가 있음
- － 준비금 적립에 따른 영업수지 악화는 보험료 산출시 합리적으로 반영

□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합의 및 종결처리

- 보상직원의 업무숙련도 및 노하우를 향상시키는 교육을 강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합의 및 종결처리를 유도하여 손해액 경감을 유도할 필요(끝)

CEO Report 2006-05

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

발행일	2006년	3월	일
발행인	김	창	수
편집인	나	해	인
발행처	보	험	개 발 원
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		
	대표전화 368-4000		
인쇄소	(주) 유성사		
	대표전화 2285-0070		

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
자동차보험본부 상품팀(☎368-4094)으로 하여 주십시오.